

#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19
----------	------

제출년월일 : 2013 . 6.

제출자 : 충주시장

## 1. 제안이유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시정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한 인사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하여 공로자의 자부심을 북돋우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민대상 특별 부문 신설(안 제2조제6호)
- 나. 특별 부분 대상자 자격 신설(안 제3조후단)
  - ☞ 충주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충주의 위상을 높인 관외거주자로서 시장이 인정한 자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 : 해당없음
- 라. 그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2013. 5. 3 ~ 5. 23) 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완료
  - (3) 부패영향평가 : 심사완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심사완료

##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를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여하기 위하여”를 “수여하는 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시상 부문 및 인원)”을 “(시상 부문과 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산업”을 “산업,”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을 “농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특별 부문

제2조제2항 중 “시장은 각”을 “시장은”으로, “못한 경우에는 시장하지 아니한다”를 “못했을 때에는 시장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현재까지 시”를 “현재까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제2조제6호의 특별 부문은 충주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충주의 위상을 높인 관외거주자로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제3조제2항제2호 중 “아니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를 “않았거나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경과되지 아니한”을 “지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야기한”을 “일으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장이나 개인”을 “장·개인”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개인 추천의 경우에는”을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세대주 20명 이상의 연서에”로, “첨부하고 세대주 20인 이상의 연서로”를 “붙여”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에서 각”을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인사 또는 시의회의원 및”을

“지역인사, 시의회의원,”로,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2인”을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통할하되,”를 “총괄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에 대하여”를 “위원회에게”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각 부문별”을 “부문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이 각 부문별 위원장이 되며 부문별 5인”을 “부위원장이 부문별 위원장이 되며, 부문별 5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되고”를 “되고,”로 한다.

제9조 후단 중 “부득이한 경우”를 “어쩔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부득이한”을 “어쩔 수 없는”으로, “수령할 수 없는”을 “받을 수 없을”로,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을 “대신”으로 한다.

제11조 중 “수상자에 대하여”를 “수상자를”로,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를 “기회를 우선하여”로 한다.

제12조 중 “시상에 관하여”를 “시상에”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u>	<u>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 문화의 창달에 공적이 많은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충주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 이라 한다)을 <u>수여하기 위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수여하는 데</u> ----- -----.
제2조( <u>시장 부문 및 인원</u> ) ① 시민 대상의 시장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u>산업</u> 경제 부문  4. <u>농림</u> 축산 부문  5. (생 략)  <u>&lt;신 설&gt;</u>  ② 시민대상 <u>시장은 각</u>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적합한 자가 없어 시장 대상자를 결정하지 <u>못한</u> 경우에는 시장하지 아니한다.	제2조( <u>시장 부문과 인원</u> )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산업</u> , -----  4. <u>농림</u> , -----  5. (현행과 같음)  <u>6. 특별 부문</u>  ② ----- <u>시장은</u> ----- ----- ----- <u>못했을</u> <u>때에는 시장하지 않는다.</u>
제3조(수상 대상자) ① 수상 대상 자는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 <u>현재까지</u>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과거 5년 이상 시에 거주한	제3조(수상 대상자) ① ----- ----- <u>현재까지</u>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 -----

현 행	개 정 안
경험이 있으며 추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후단 신설>	----- ----- ----- . 또한 제2조 제6호의 특별 부문은 충주 발전 에 이바지하였거나 충주의 위상 을 높인 관외거주자로서 충주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 정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 ----- -----.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 -----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 ----- 지나지 않은 --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3. ----- 일으킨 --
4. 동일한 부문에 이미 시민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자	4. 같은 ----- -----
제4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해당 읍·면·동장 또는 시 소재 기관·단체의 장이나 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 추천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첨부하고 세대주 2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 후보자 추천) ----- ----- ----- 장· 개인----- . -----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세대주 20명 이상의 연서에 ----- ----- 붙여 -----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상 대상자 결정) 시장은 <u>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 후보자</u> 중에서 부문 심사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공적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시상 대상자 결정) ----- 제4조에 따른 ----- ----- ----- ----- ----- -----.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공적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u>당해 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u>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u>중에서 각 부문별로 1명씩</u> 호선 한다. ④ 위원은 시상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지역인사 또는 시의회의원 및 관계공무원</u>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u>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은 2인</u> 이내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u>통할하되</u> ,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연장자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u>과반수</u>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 ----- -----. ③ ----- ----- ----- <u>중에서</u> ----- -----. ④ ----- ----- <u>지역인사,</u> <u>시의회의원,</u> ----- ----- <u>위촉하되, 관계</u> <u>공무원은 2명</u> -----. ⑤ ----- ----- <u>총괄하며</u> ----- ----- -----. ⑥ -----

현 행	개 정 안
<p><u>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u>위원에 대하여</u>는 예산의 범위에서 「<u>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⑧ 그 밖에 위원회 <u>운영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7조(부문 심사위원회) 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문별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각 <u>부문별로</u> 부문 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부문 심사위원회는 제6조 제3항의 <u>부위원장이 각 부문별 위원장이 되며 부문별 5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8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p> <p>②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 과장이 <u>되고</u>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p> <p>제9조(시상)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장이 시상하며, 시상 대상자에게 상패와 꽃다발을</p>	<p><u>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u> -----.</p> <p>⑦ ----- <u>위원에게</u> ----- 「<u>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u>」----- -----.</p> <p>⑧ ----- <u>운영에</u> ----- -----.</p> <p>제7조(부문 심사위원회) ① ----- ----- ----- <u>부문별</u>----- -----.</p> <p>② ----- ----- <u>부위원장이 부문별 위원장이 되며, 부문별 5명</u>----- -----.</p> <p>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되고,</u> ----- -----.</p> <p>제9조(시상) ----- ----- -----.</p>

현 행	개 정 안
수여할 수 있다. 다만 <u>부득이한 경우</u> 시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 <u>어쩔 수 없을 때에는</u> -----.
제10조(대리 수상) 시민대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u>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u>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u>본인에 갈음하여</u>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제10조(대리 수상) ----- ----- <u>어쩔 수 없는 때에는</u> ----- <u>받을 수 없을 때에는</u> ----- ----- 대신 -----.
제11조(수상자 예우) 시장은 <u>수상자에 대하여</u> 시정 관련 보고회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 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u>우선적으로</u>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수상자 예우) --- <u>수상자를 위하여</u> ----- ----- ----- ----- <u>기회를 우선하여 부여</u> -----.
제12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시민대상 <u>시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준용 규정) ----- ----- <u>시상에 관하여</u>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u>시행에 관하여</u> -----.

## 관 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